

인가번호 제 호

(사회적협동조합 ·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)
설 립 인 가 증

1. 조 합 명:
(연 합 회 명)
2. 이사장(회장) 성명:
3. 주 소: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
설립을 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기획예산처장관
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

직인